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

‘20. 9.

< 목 차 >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개정)	1
2.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안 제4조 개정)	1
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안 제7조, 제8조 신설)	3
4.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9조 개정)	6
5.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안 제10조 개정)	7
6. 진흥시설 등의 지정취소 등(안 제11조 개정)	7
7. 품질인증기준(안 제15조 개정)	10
8. 프로세스 인증기준(제18조 개정)	10
9.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우대(안 제20조 신설)	11
10. 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안 제21조 개정)	12
1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안 제24조 신설)	13
12. 연구활동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26조 신설)	15
13.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의 측정방법(안 제29조 신설)	19
14.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안 제30조 신설)	23
15. 불이익행위등의 신고(안 제31조 신설)	31
16.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안 제32조, 제33조 신설)	33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안 제35조~제36조 신설, 제37조 개정)	34
18. 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안 제39조 신설)	36
19.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안 제40조 개정)	38
20.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안 제42조 신설)	39
2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안 제43조~제45조 개정)	40
22. 하도급 관련(안 제46~47조 개정)	41
23.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안 제52조 개정)	42
2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안 제53조 개정)	44
25.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안 제54조 신설)	45
26. 출연금 환수(안 제67조 신설)	47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조 등을 통해 지역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안 제4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을 위해 자료제출 기한과 절차 등을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법 제46조제3항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절차를 단일조문화 하고,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태조사 등의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업종과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관련 기업
3.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안 제7조, 제8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의 지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7조)
 -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제1항)
 -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제2항)
 -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제3항),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추진계획 제출(4항)
-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제8조)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회 운영 지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촉진 업무의 효과적 시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2.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3.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4.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급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9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요건을 완화하고 조문 체계화

나. 제·개정 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순서에 따라 조항순서 변경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을 받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주규모 기준을 완화하고(제9조제1항),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제9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확충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안 제10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중 상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조문 체계화

나. 제·개정 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순서에 따라 조항순서 변경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되 일부 지정요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제10조제1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진흥시설 등의 지정취소 등(안 제11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진흥시설과 지정단지의 지정 '해제'를 지정 '취소'로 개정함에 따라 후속 조치
- 진흥시설 등의 지정 취소에 필요한 청문절차에서 진흥시설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진흥시설 등의 지정 취소 시 법에 따른 청문절차의 세부내용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진흥시설 등의 지정취소 등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시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처분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 조문(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7. 품질인증기준(안 제15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국제표준에 기반한 품질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품질인증기준의 세부항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시행령에 열거된 품질인증의 기준 항목을 중요 항목만으로 축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세부항목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제15조제1항제2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기준의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기준의 적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프로세스 인증기준(제18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을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별 특성에 따라서 달리 운영할 필요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대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 인증기준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제18조제1항 단서),
- 소프트웨어융합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 필요한 프로세스 역량 및 품질특성도 인증기준으로 포함함(제18조제1항 제6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인증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인증부담 경감
- SW시장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변화 및 품질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우대(안 제20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4항이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프로세스 품질역량 향상을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안 제21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빠르게 변화하는 소프트웨어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효기간을 명시
 - 현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된 프로세스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제·개정 내용

-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회에 한하여 각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4항 및 제5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프로세스 인증 실효성 제고
- 간이한 심사를 통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안 제24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지원 및 관련 서류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제출대상 자료는 SW기술자가 소속된 소속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일부(제24조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제24조제2호) 등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SW기술자 경력확인제도의 신뢰성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기술보증기금법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제38조의3(제공 요청 과세정보) 법 제1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등에 따른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3. 「소득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12. 연구활동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26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법 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제26조제1항), 교육부 소관 학술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개인 연구자에 대한 학술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함을 명시함(제26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학술진흥법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학술활동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술활동 결과 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및 참여인력 등 학술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7.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학술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학술 교류와 협력, 우수도서 보급, 인력양성, 시설·기자재 지원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이 아닌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의 학술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학술활동 계획 등 협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제5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경우 지체 없이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3. 소프트웨어 역량 측정방법(안 제29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역량 측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시행령을 신설함

나. 제·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는 필기와 실기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제29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제29조제2항), 평가 내용, 일시, 장소 등은 시행일 90일 전에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제29조제3항)
- 평가 실시 후에는 응시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제29조제4항),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결과는 무효로 하고 행위자는 3년간 응시를 제한(제29조제5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제29조제7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한국사 능력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측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시행한다.

② 한국사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이하 "시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험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시험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계획
2. 문제의 출제와 선제(選題)
3. 시험 채점 등 관리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7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로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4.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안 제30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제2항이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약의 목적, 범위,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명시(제30조제1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한 사항(제30조제2호),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호),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의 지체상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제30조제4호),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제30조제5호), 소프트웨어사업의 결과물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 활용, 보호, 분쟁해결에 대한 사항(제30조제6호) 등을 명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세변화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계약 관련 분쟁 사례들로부터 계약서 필수 사항들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7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위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 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 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 ② 소방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

-
- 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15. 불이익행위등의 신고(안 제31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등 발주자의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등 방법, 절차 등을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31조제1항), 보완요청(제2항)과 피신고자에 대한 통보절차(제3항)을 규정하고,
-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절차로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 청취, 공정위에 조치 요청(제4항), 처리결과 통보(제5항) 등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불이익행위 등의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 선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 하도급법 >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하도급법 시행령 >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 신고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6.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안 제32조, 제33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40조)가 마련됨에 따라 인정 요건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민간의 자본과 기술 활용,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공공과 민간의 협력 등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안 제32조),
- 국가기관등의 장의 인정 요청 및 확인, 민간부문의 제안 등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3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간기술과 자본 활용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안 제35조~제36조 신설, 제37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향평가 및 재평가 제외 대상,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제35조 제1호),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동조 제2호),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동조 제3호)와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동조 제4호)로 한정하고,
 - 재평가 제외 사유는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6조 제1호), 재평가하였으나 계속 반복신청하는 경우(동조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동조 제3호)로 규정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제37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 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안 제39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가 1)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과 2) 대통령령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상세화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여부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요건을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단서에 따라 사전협회가 제외되는 사업(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제1호에서 3호)의 경우에도 중복성 검토 등만 완료된 사업이므로 요구사항 상세화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포함하되,
 -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제4호)은 제외하고(제39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제39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예고 과정에서 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추진

라. 입법효과

- 과업내용 명확화 등을 통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2. 전자정부지원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고시)

제4조(대상사업) ①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 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
 - 라.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 지역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2.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3. 시,군,구는 사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계속사업
4.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5.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7.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
8.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9.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10. 외교·국방·통일·안보 등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 확정된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1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12.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

19.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안 제40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제1항에 따라 지원 정책의 대상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제40조제1항),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하되(제40조 제2항),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토록 함(제40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20.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안 제42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등) 제1항에서 위임한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의 세부기준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적합한 계약체결 방식을 명시하여 합리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2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안 제43조~제45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및 과업범위를 확정 및 변경하는 심의절차를 담당하는 과업심의위원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43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제44조) 및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을 규정(제45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과업내용 명확화·상세화, 계약변경 등 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22. 하도급 관련(안 제46~47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하도급 및 재하도급 허용 범위 등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하도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및 전문기술의 범위를 명시(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제46조),

- 재하도급의 허용사유를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47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하도급 및 재하도급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생태계 선진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3.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안 제52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계약금액(제52조제1호),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명 및 계약금액, 수량, 계약방법(제52조제2호) 등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소프트웨어 계약의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2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안 제53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명시하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제53조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제53조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중 국세청의 휴업·폐업 및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자료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관리제도의 신뢰도 및 사업자의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5.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안 제54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함
-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를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제54조제1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제54조제2호)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활용을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 공간정보관리법 >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략)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26. 출연금 환수(안 제67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74조(출연금 환수)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제67조제1호),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제67조제2호) 출연금 환수업무를 담당토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출연금 환수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례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